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27.(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2. 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61호)
- 나. 회부일자 : 2026. 2. 11.
- 다. 상정일자 :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6. 2. 23.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2022.12.31.)에 따라 구 차원의 세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성북구만의 특화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실효성이 낮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운영 및 수강료·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주민 소통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특화를 도모함
- 종전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행정협의회 규정은 실효성이 낮거나 기능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삭제 및 정비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위촉 분야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함
- 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대상,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주민 소통 공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2. 26. ~ 2026. 1. 15.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2022.12.31.)에

따라, 마을공동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구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재정립하고, 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동체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서울시 정책과 연계되어 운영되던 기본계획,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등 제도를 정비·삭제하고, 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제명 및 안 제1조(목적)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마을만들기’에서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함. 이는 주민 주도의 공동체 형성과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 목적을 재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성격과 정책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2) 안 제2조(정의)

- ‘성북형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등 정책 대상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 다양한 주민 조직과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포용함으로써 공동체 사업 참여 기반을 확대함.

(3) 안 제6조(기본계획 삭제 및 시행계획)

- 상위 조례 폐지 및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종전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삭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전환하여 정책 운영의 탄력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 다만, 중·장기 정책 방향 관리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계획 수립 시 중기 목표와 성과지표를 포함하는 내부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안 제7조~제13조(사업 지원·선정·평가)

- 사업 절차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관련 용어를 ‘성북형 마을공동체’로 정비함. 이는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새로운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을 확보하려는 조치로서 적절하다 사료됨.

(5) 안 제14조~제18조(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

- 위원회 명칭을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변경하고 성별 고려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 구성의 균형성을 강화함. 특히 주민공동체운영회 대표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장 의견 반영을 강화하고, 공모사업 심사 시 제척 규정을 명문화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6) 안 제24조~제27조(주민 소통 공간 설치·운영 및 사용료)

- 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위탁 운영 가능 규정을 포함하는 한편, 수강료·사용료의 징수, 감면·환불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현재 우리 구는 다음과 같이 총 4개소의 주민 소통 공간을 관리하고 있음.

[주민 소통 공간 시설 현황]

구 분	시설 현황	비 고
주민커뮤니티 공간(직영)	- 성북함께어울림센터(종암로19길 60(종암동))(24.8. 개관) - 508커뮤니티센터(북악산로1길 64(정릉동))(24.8. 개관)	- 기간제 채용(3명)
마을활력소 (지원)	- 정릉함동지 마을활력소(정릉로21길 61-12(정릉동)) -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길음동 길음지하보도 내)	- 정릉함동지민민마을운영협약 - 길음아지트(민간위탁)

(7) 그 밖의 종전 제8조(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및 제4장(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마을만들기 관련 협의·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던 제도이나, 현재는 구 내부 협업체제로 관련 기능이 대체되고, 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업무가 구 직영체제로 전환됨.
- 이에 따라 조례상 별도의 기구 및 조직을 존치할 필요성이 낮아 관련 규정을 정비·삭제한 것으로, 현행 운영 체계와의 정합성 및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 조례 폐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성북구 실정에 맞는 마을공동체 정책 체계를 재정립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개정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안 [별표 2]는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3조(지원 등)는 감면 가능한 경비를 특정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4. 구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

- 따라서 감면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례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 부칙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민 소통 공간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지원 항목으로 명시하는 '타 조례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안 부칙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제3조(생략)	제1조~제3조(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민 소통 공간의 사용료 및 수강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안 [별표 2]는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 3조(지원 등)는 감면대상을 특정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에 한정하여 규정함.

나. 수정 내용

- 감면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례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 부칙 제4조(다른 조례 개정)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민 소통 공간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지원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함.

7. 소수의견 요지: 회의록 참고

8.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록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호	관련 561
-----------	--------

제안연월일 : 2026년 2월 23일
제 안 자 :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별표 2]는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3조(지원 등)는 감면 가능한 경비를 특정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4. 구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

- 감면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례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 부칙 제4조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민 소통 공간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지원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수정안
<p>부칙</p> <p>제1조~제3조(생략)</p> <p><u><신 설></u></p>	<p>부칙</p> <p>제1조~제3조(개정안과 같음)</p> <p><u>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p> <p><u>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p> <p><u>5.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민 소통 공간의 사용료 및 수강료</u></p>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 및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예산이 성립된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위원은 개정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민 소통 공간의 사용료 및 수강료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제1조 ~ 제3조(생략) <u><신 설></u>	부칙 제1조 ~ 제3조(개정안과 같음) <u>제4조(다른 조례의 개 정) 서울특별시 성북 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3조제1항에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u> <u>5. 구가 설치·관리 하는 주민 소통 공 간의 사용료 및 징 수료</u>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2. 27.(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2. 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62호)
나. 회부일자 : 2026. 2. 11.
다. 상정일자 :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6. 2. 23.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제1항에 의거 ‘2026 성북 시티투어’ 를 운영 목적으로
-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업 :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
- 위탁기간 : 2026. 04. ~ 11.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시티투어 종료 시까지)
- 위탁내용 :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 및 관리
 - 성북 시티투어 사업계획(코스개발 등) 수립을 통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성북 시티투어 사업계획(코스개발 등) 수립을 통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예약 시스템 개발·운영 및 신청접수 관련 업무
 -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홍보
 - 수행인력, 버스임차(버스랩핑 포함), 안전관리, 관광편의 제공 등
 - 기타 성북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 위탁비용 : 총100,000천원
- 수탁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여행업에 등록된 자
 - ※ 여행업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대형버스(45인승) 확보(전세버스회사 임대계약 포함) 가능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 시티투어버스 운영 또는 관광순환(셔틀)버스 등 유사 관광교통 업무를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운영한 사업자
 - 공고일 현재 신청인의 주사무소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인 자
- 위탁업체 선정 : 공개모집 후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의 후 선정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 예산조치 : 2026년 본예산 편성(민간위탁금 총100,000천원)
-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본 동의안은 '성북 시티투어' 운영 사무를 계속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2(승인 및 동의)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본 사업은 지역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활용과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계속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시티투어'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임.
-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당해연도 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2026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버스투어 약 60회, 예약 시스템 운영 등 사업 전반을 추진

시티투어 운영 개요

□ 운영개요

- ('26년 예산) 총 100,000천원(전액구비)
- 운영형태 : 성북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거점을 잇는 테마형 버스투어
- 운영기간 : 2025. 4. ~ 11. 10:00~17:00(주 2회) / 총 60회 운영(예정)
- 운영요금 : 5,000원~10,000원(입장료, 체험료 포함 / 식사 미포함)
- 운영코스 : 테마별 코스 운영 ※ 선정업체 제안코스 활용 및 협의 예정
- 운영코스 예시(2025년 코스)
 - (1코스) 한양도성·와룡공원·심우장 → 자유종식 → 성북근현대박물관
→ 길상사 → 삼청각
 - (2코스) 우리옛돌박물관 → 자유종식 → 오동근린공원자락길·오동숲속도서관
→ 고려대학교박물관 → 의릉

할 계획임.

- 2021년부터 지속된 본사업은 5년간 총 254회 운영을 통해 5,811명의 이용 실적을 거두는 등 지역 관광진흥에 가시적인 기여하고 있음.

시티투어 실적

□ 추진실적

구분	운영기간	운영형태	총사업비(천원)	운영실적
계	-	-	506,120 (시 400,000/구106,120)	총 254회, 5,811명
2025	2025.4~11	(주)로망스투어(민간위탁)	100,000(구비)	총 60회
2024	2024.10.	(주)로망스투어(수의계약)	6,120(구비)	총 5회, 165명 ※사비 미확보로 역사문화탐방 행사운영비 활용 추진
2023	2023.6.~12.	(주)로망스투어(민간위탁)	143,713(시비)	총 85회, 2,291명
2022	2022.10.~12.	(주)로망스투어(수의계약)	56,287(시비)	총 29회, 888명
2021	2021.8.~11.	성북문화재단 (아트버스킹, 민간위탁)	200,000(시비)	총 75회, 648명

□ 민간위탁 타당성 및 적정성

- '시티투어' 사업은 관광코스 기획 및 버스 차량 운용, 예약·홍보 시스템 운영, 현장 안전관리 등 복합적인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또한 공개모집 절차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시티투어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운영 방식과 코스 구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이용객의 새로운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회의록 참고

8.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록 참고